



(신 설)

- 1. 기금운용관 : 사회과장
- 2. 지 출 원 : 사회계장
- ② 기금운용관은 장학기금을 적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장학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의 3 (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 장학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년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장학기금 운용결산서를 서산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서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서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산군 각종 위원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